



국가인권위원회공보

국가인권위원회

2021년 6월 15일

제 19권 제 3호

알 립

- 국가인권위원회공보는 당사자(진정인, 피해자, 피진정인) 및 관계인의 인격권을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들의 이름, 소속기관, 주소 등을 익명으로 처리하고, 이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결정문의 일부를 수정 또는 삭제함을 알려드립니다.
- 현재까지 발간된 공보는 그 전문이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humanrights.go.kr>)에 게재되고 있으므로, 널리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목 차 -

공 지 사 항

1	인사발령 등	747
2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주요 동정	750
3	진정접수 · 상담 · 민원 · 안내 처리 현황	756
4	진정사건 처리 현황	758

법령·정책 등 권고결정 및 의견표명

- 1** 2021. 4. 16.자 결정 20진정0676300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 동의입원에 대한 의견표명】 767
-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정신의료기관 입원 시 스스로의 선택권 보장 취지로 도입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이라 한다.) 제42조 동의입원은 도입 취지와 달리 정신질환자의 신체의 자유와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높으며, 시행 상에서도 당사자의 진실한 의사에 기반하기 어려우므로 전면 재검토할 것을 의견 표명

인권침해행위 조사결정

- 1** 2020. 8. 25.자 결정 19진정0602300 【경찰의 뒷수갑 사용으로 인한 인권침해】 779
-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들을 비롯한 소속 직원들에게 수갑 사용 과정에서 인권침해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 2** 2020. 8. 25.자 결정 20진정0322800 【경찰의 폭행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미흡】 787
-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들에 대하여 서면주의 조치하고,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112신고를 공정하고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 3** 2020. 8. 25.자 결정 19진정0752800 【집행관의 부당한 강제개문】 801
- 지방법원장에게, 향후 부동산 인도집행을 최고하는 과정에서 채무자의 주거의 자유를 침해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피진정인들을 비롯한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 4** 2020. 8. 25.자 결정 19진정0881900 【경찰의 부당한 사진촬영 등 인권침해】 807
- 경찰서장에게,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의 신체에 대한 사진촬영 시 그 목적과

용도를 고지하고, 당사자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여 조서에 기재하거나 동의서를 받는 등 사진촬영이 적법절차에 따라 이루어졌음을 입증할 수 있도록 피진정인 6을 포함한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5 2020. 8. 25.자 결정 20진정0065200 【**검찰의 부당한 압수·수색 등 인권침해**】 820

【1】○○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피진정인 1을 경고 조치하고, 휴대전화 압수·수색 과정에서 적법절차 원칙을 준수하도록 피진정인들을 포함한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2】○○○○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피진정인 3을 주의 조치할 것을 권고

6 2021. 3. 31.자 결정 20진정0910600 등 【**요양병원 종사자에 대한 이동동선 신고 요구**】 833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요양병원 종사자에 대한 예상 이동동선 작성·제출 등의 행위가 중단될 수 있도록 조치하거나 최소한 종사자의 동의를 받아 운용할 것을 권고

7 2021. 4. 12.자 결정 20진정0211800 【**대학교의 채플 참석 강요로 인한 종교의 자유 침해**】 847

피진정인에게, ○○○(채플) 수업을 진행함에 있어 동 수업을 대체할 수 있는 과목을 개설하는 등 학생 개인의 종교의 자유 등을 침해하지 않는 방안 마련을 권고

차별행위 조사결정

1 2021. 3. 25.자 결정 20진정0067800 【**교사 채용시 나이 및 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 857

피진정인 학교법인 □□학원 이사장에게, 진정인에 대한 구제방안을 마련할 것과, 동일·유사한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

2 2021. 3. 25.자 결정 21진정0046500 【**지방자치단체의 호봉획정 시 경력인정**】

차별] 868
 피진정인에게, ○○○센터 종사자 호봉획정 시 유초·중등교사 및 청소년지도사의 근무경력도 업무정합성을 고려하여 합리적 범위에서 호봉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을 개정할 것을 권고

3 2021. 3. 25.자 결정 20진정0829200 **【국립대학 조교에 대한 유연근무 배제】**
 878
 피진정인에게, 직원 유연근무제 적용대상에 조교(학사 조교 포함)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

4 2021. 3. 25.자 결정 20진정0512500 **【지방 공기업의 직원경력 산정시 계약직공무원 경력 불인정】** 888
 피진정인에게, 연봉책정을 위한 경력 환산과 관련하여 비정규직 근무 경력을 일률적으로 배제한 인사관리규칙 <별표1>을 개정하고 향후 진정인의 경력 산정에 반영할 것을 권고

5 2021. 4. 23.자 결정 20진정0596900 **【경력경쟁 공무원 채용 시 특정 지역 및 특정 기관 경력으로 응시 요건 제한】** 897
 피진정인에게, 지방공무원 경력경쟁 임용시험에서 특정 지역 및 특정 기관에서의 근무 경력만으로 한정된 경력 요건을 개선할 것을 권고

6 2021. 4. 23.자 결정 19진정0545500 **【보험금 대리청구인 지정 시 비혼·독신자 차별】** 905
【1】 피진정인에게, 보험상품 가입 고객이 비혼·독신이라는 이유로 보험금 대리청구인을 지정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피진정 회사 지정대리청구인 제도를 보완할 것을 권고함.
【2】 ○○○○원장에게, 이 사건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결정을 시중 보험회사에 전파하여 지도하는 등 피진정인 외 다른 보험회사에서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함.

7 2021. 4. 23.자 결정 19진정0456600 **【무기계약직임을 이유로 한 임금 차별】**
 919
 이 사건 진정에 대해서는 각하하고, 피진정인에게 피진정 재단 ○○지원단 내부에 존

재하는 직위 및 임금의 차이를 반영하여 무기계약직 직군별 보수기준표를 마련할 필요
요가 있다는 의견 표명

인권도서관 신착자료

1 국내서 단행본 **933**